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4-298호

2025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 정정공고
2025년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20.
국가보훈부장관

주택 우선 공급

1. 신청 대상자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2. 신청 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 기간 : '25. 1. 2.(목) ~ 1. 10.(금) (09:00 ~ 18:00)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4.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5. 신청 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함)
 -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에서 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되는 사람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해당되는 사람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해당되는 사람

6. 구비서류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천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각 1통
 - ※ 개인정보제공동의 확인을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필요(신분증 지참 방문자에 한해 서명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통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무주택 입증서류 1통 (해당자만 제출)

7.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우선순위는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 후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내-대부지원)에서 확인 가능
- 2025년도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해 우선순위부 확정 전까지 적용하며, 2025년도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2024년도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 2025년도 주택 우선 공급 정기신청 이후 우선순위부 확정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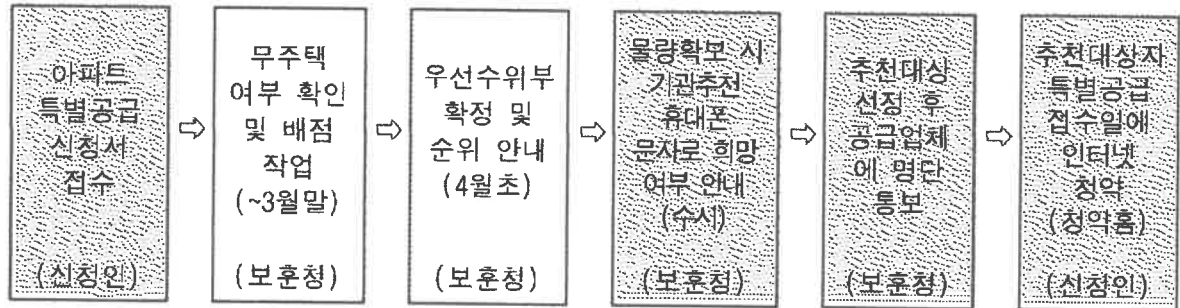
8. 기타 안내사항

- 전년도 신청자 중 지원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 분양 → 임대, 임대 → 분양으로 변경 희망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호관서로 정기접수기한 내에 변경 신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종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임대아파트 등 특별공급 지원(동·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은 신청 불가
 - ※ 단, 특별공급으로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 지원 받은 분은 분양으로 재신청 불가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분양신청자에 한함)
-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제외
 - ※ 「해외아주법」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 「주택법」 제64조제1항의 전매행위기간 위반 또는 「주택법」 제65조제1항의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받을 경우 아파트분양 또는 주택임차 등의 대부가 가능함
 - ※ 단, 참전유공자 및 2025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한 대부지원 제외자는 대부지원 불가하고, 나라사랑대출 중 분양대부 또는 주택구입(신축)대부를 받을 경우 추후 주택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금액에 대하여 면제 / 85㎡ 초과: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주택법」 제64조, 제65조, 제10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호관서에 전화 신고

9. 참고사항

-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지원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적용을 목표로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개편(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여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대기자 및 물량에 따라 추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호관서나 또는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바랍니다.

1.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



※ 대부대상자 :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대부(취득세 감면)

2.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않은 세대의 구성원

▷ 특별공급대상 추천자는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확인은 필수

※ 입주자 모집공고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

▷ 특별공급 기관추천하였으나 개인사정 등 청약포기 하는 경우

- 당해연도 추천에서 제외(미달지역은 제외)
- 다음연도 우선순위부 작성시 감점(-10점, 미달지역 제외)
- 미지원에 대한 가산점 없음.

▷ 주택 우선공급 지원(동호수 배정) 후 계약 포기

지원자로 간주, “주택 특별공급 1회 제한규정”에 따라 특공신청에 제한 있을 수 있음. 단, 국민임대 희망자의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 미비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미지원자로 간주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에 중복신청 불가

▷ 과거 특별공급(타 특별공급 포함)을 받았거나 그 세대에 속한 경우 공급제외 대상임.

▷ 분양은 평생 1회만 지원, 임대는 3년 경과 후 무주택요건 만족시 재신청 가능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된 경우 신청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

-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 062-975-6702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LH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일정 등 안내 1600-1004(문자알림서비스)로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문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아파트 신청	신청종류	☐ 분양아파트 ☐ 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아파트		
	희망지역		면적	☐ 전용 60㎡ 이하 ☐ 전용 60㎡ 초과

주거상황	거주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 방 보 훈 청 장 귀하
보 훈 지 청 장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소득·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수수료 없음
-------------	---	-----------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전 결			

<별지 9호>

주택 우선공급(분양, 임대) 추천 서약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특별공급의 유형안내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10년이상복무군인, 다문화 가족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1. 상기인은 금회 주택 특별공급(분양, 임대) 추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약약을 제출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천 후 개인사정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추천에서 제외되고**, 다음 연도 주택(분양, 임대)의 우선공급 신청 시 전년도 미지원자에 대한 **가산점이 없고, 청약포기에 대한 감점 △10점이 부여되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주택 우선공급 지원(동호수 추첨 포함) 후에는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지원자로 간주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1회 제한규정에 따라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에 필요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과거 특별공급(타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의 경우 공급제외 대상으로 신청 시 부적격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에 한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일반분양 및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그 사실을 보훈(지)청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대부금 또는 나라사랑대출로 취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 주택은 지방세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약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해당업무(대부지원 및 상환, 아파트지원 등) 종료일까지 이용합니다. 다만, 종료일 후라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鑑 이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작성해주세요. 鑑

위 동의인 관계 :	본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배우자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자녀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자녀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동의인 관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
2.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전화번호, 직업 및 거주실태(임대차계약 등),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표준보수월액, 국민연금급여),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 일용근로자소득액 · 근로장려금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대법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안전부 재산세 · 취득세 · 조합원입주권, 국토해양부 지적정보 · 건축물대장 · 차적정보 · 선박원부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동)주택가격 · 분양권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임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 농림수산물부 어선원부 · 농업직불금 · 농지원부,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국방부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보수월액(퇴직금,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우체국연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퇴직금 · 고용보험, 사립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퇴직연금보수월액	소득 및 재산조사 (해당자에 한함)
대부 지급 및 아파트 지원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 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업무의 위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법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위탁기관 포함) 및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
|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14. 사업자등록증명 |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15. 임대사업자등록증 |
|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16. 휴업사실증명 |
| 4. 장애인증명서 | 17. 폐업사실증명 |
| 5. 임야대장 | 18. 소득금액증명 |
| 6. 토지대장 | 19. 납세사실증명 |
|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20. 납세증명서 |
|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 9. 건축물대장 | 22. 공무원연금내역서 |
|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 11. 주택가격확인서 |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12. 선박원부 |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13. 자동차등록원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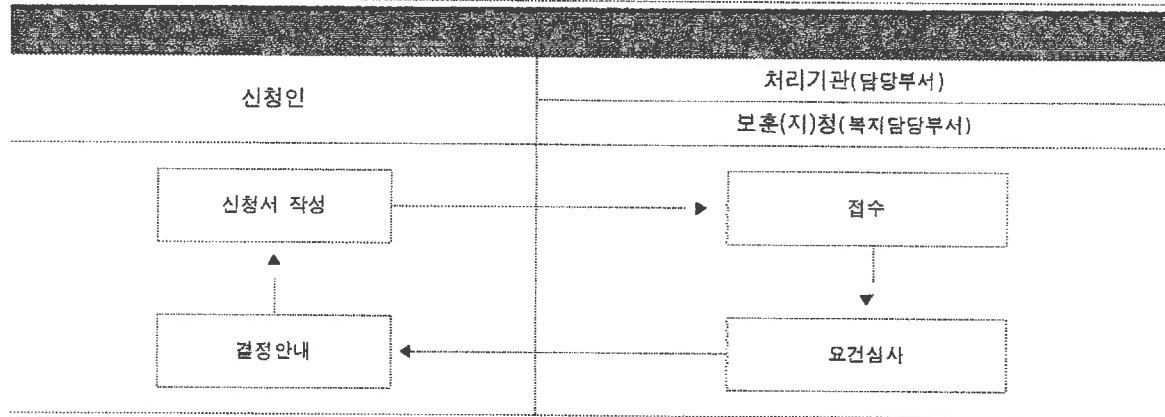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작성해주세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세대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세대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세대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세대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세대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세대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세대원	(서명 또는 인)

1.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 및 제68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 기관 : 개별 민원의 처리기관에 적음
신청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방문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민원처리기관 민원(사무)명		
본인정보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정기제공요구	주기 ☐ 동일민원 접수 시 ☐ 기타()	종료시점 ☐ 1년 ☐ 3년 ☐ 5년
※ 본인정보 정기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본인정보 보유기관귀하

본인 동의사항

1. 본인은 민원(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